

##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-4조의2제5항제2호다목 중 “상장폐지되는 경우”를 “상장폐지되는 경우(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

제4-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(이하 ”의무예치액“이라 한다)”를 “(통화별로 산정한다. 이하 “의무예치액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할 수 있다.

가. 미 달러화 이외의 외화로 예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예수금을 제4-44조에 따라 기타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그 금액

나. 투자자의 투자자예탁금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미 달러화 예수금 중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수금을 외국환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그 금액. 다만, 금융감독원장은 100분의 30 이하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4-40조제1항제2호 중 “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”를 “신용평가업자 또는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2-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(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) 이상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미합중국이 발행한 채권의 매수

11.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파생상품 중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

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(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%를 초과하는 외국환은행 및 순자본비율이 150% 이상인 1종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에 한한다.) 및 동 거래에 따라 교환한 원화의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운용 및 그에 부수하는 환전 거래

제4-42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투자자가 해외에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 증권시장(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),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, 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)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(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)과 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에게 예약하기 위해 인출하는 경우

제4-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6호”를 “제7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-39조 및 제4-42조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, 제1-4조의2제5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-4조의2(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영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영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(이하 "기업인수목적회사"라 한다)가 해산되고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(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)의 보유 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</p> <p>가. · 나. (생략)</p> <p>다. 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<u>상장폐지되는 경우</u></p>	<p>제1-4조의2(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----- ----- ---- <u>상장폐지되는 경우(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</u></p>



독원장은 100분의 30 이하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4-40조(별도예치금의 운용)

① 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
1. (생략)
2. 조건부매수. 단 대상증권은 법, 영 및 규정에 따라 예치기관이 별도예치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과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(주식 관련 사채권을 제외한다)에 한한다.

3. ~ 9. (생략)

<신설>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4-40조(별도예치금의 운용)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신용평가업자 또는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2-4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(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) 이상의 -----  
-----.

3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미합중국이 발행한 채권의 매수

11.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파생

상품 중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 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(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%를 초과하는 외국환은행 및 순자본비율이 150% 이상인 1종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에 한한다.) 및 동 거래에 따라 교환한 원화의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운용 및 그에 부수하는 환전거래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4-42조(별도예치금의 인출)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투자자가 해외에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 증권시장(그 결제기관을 포함한

② ~ ⑥ (생략)

제4-42조(별도예치금의 인출)

① · ② (생략)

③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도예치금을 인출하는 때에는 영 제7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~ 6. (생략)

<신 설>

④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제3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별도예치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다), 외국 다자간매매채결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채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, 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)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(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)과 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인출하는 경우

④ -----  
 -----제7호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